

서울특별시 마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19. 3. 6.
행정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9.2.22. 마포구청장

나. 회부일자 : 2019.2.25.

다. 상정일자 : 제228회 임시회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 (2019.3.6.)
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 【제안설명자 : 기획예산과장 박창열】

가. 제안이유

마포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전반적인 관리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조례 제정의 목적, 용어의 정의(안 제1조 ~ 제2조)
- 기본원칙, 적용범위, 다른 조례와의 관계(안 제3조 ~ 제5조)
- 위원회의 설치요건 및 사전협의(안 제6조 ~ 제7조)
- 위원회의 설치내용 및 구성(안 제8조~ 제9조)
- 위원의 해촉 및 제척·기피·회피(안 제10조~ 제11조)
- 위원회의 운영 및 수당 (안 제12조~ 제13조)
- 위원회의 관리 및 정비, 통합·폐지 (안 제14조~ 제15조)

3. 검토보고(전문위원 조희옥)

○ 본 조례안은

마포구에 설치되는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통일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관리함으로써 내실있는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.

○ 검토의견으로는

2019년 1월말 현재 우리구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·협의·심의 등을 하기 위하여 구성된 위원회는 총 110 개이며, 설치 근거별로는 법령 59개, 조례 44개, 규칙 5개, 기타 2개임.

〈표〉 위원회 현황

(2019.1.31. 현재)

위원회수(설치 근거별)						평균 회의개최 횟수	미개최 위원회 수
계	법령	조례	규칙	기타 규정	법적근거가 없는 경우 (지침)		
110	59	44	5	1	1	2.8	31

○ 그동안 위원회는 복잡다양하고 전문화 되어가는 지방행정의 여건 변화에 맞춰 정책결정 및 집행·평가과정에 참여하여 구정의 전문성, 민주성, 공정성 등을 제고하여 왔으나,

○ 위원회 설치 시 구민 각계 각 층을 대표 할 수 있는 위원 구성이 미흡하고, 특정 위원이 여러 위원회에 중복하여 위촉되거나 장기간 연임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며,

○ 또한, 행정여건 변화로 필요성이 감소되고 운영 실적이 저조하며,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위원회가 존치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비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

- 본 조례안은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통합적이고 일관성 있는 기준을 마련함으로써,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·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.
- 조례안을 살펴보면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적정수준의 통일적 기준을 마련하고자 설치목적 및 기능, 위원의 구성 및 임기, 운영방법, 존속기한, 유사중복위원회의 설치제한 및 통합·폐지규정 등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어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,
- 안 제7조에서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할 때 사전검토요청서를 총괄부서에 제출하고 총괄부서의 장은 안 제6조제2항 및 제8조에 관한 사항 등을 검토하여 담당부서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, 담당부서에서는 통보받은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가 언급되지 않아 이에 대한 사항을 명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짐.
- 또한, 위원회는 법률, 조례 등 개별 근거기준에 따라 구성하고 있으며 회의개최 실적(최근3년간 개최사유 미발생 위원회 존재), 예산집행내역 등 위원회별 특성이 다른 점을 감안하여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정비계획 수립으로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위원회 관리에 효율성을 제고해야 할 것으로 보임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8. 기타 : 없음